

김포시 고시 제2024-54호

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취소 고시

김포시 380-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기고시된 사항 중 『김포시 고시 제2023-199호(2023.07.18.)』 고시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취소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2. 23.

김 포 시 장

- 취소대상 고시 : 김포시 고시 제2023-199호(2023.07.18.)
- 취소 사유 : 행정절차(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협의를) 미이행에 따른 기 인가 고시[김포시 고시 제2023-199호(2023.07.18.)] 취소
 - ※ 향후 계획 :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협의 등을 완료한 후 사업기간 연장(금회 취소고시 내용), 건축계획 변경 등 사항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 예정
- 취소 내용 : 정비사업시행기간 변경

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
 -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
2. 위치 및 면적 : 김포시 북변동 380-8번지 일원 / 115,021㎡(변경없음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김만(김포시 북변중로 42 오성빌딩 2층)
4. 정비사업시행기간(변경)
 - 당초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 - 변경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. 11. 29.(변경없음)
6. 의제처리되는 사항(변경없음)
 - 가. 「주택법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 - 나. 「건축법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 - 다. 「산지관리법」제14조·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
 - 라. 「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
 - 마.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(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)
7. 수용(사용)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(변경없음)
8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. 끝.